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57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산업융합 촉진법(법률 제21155호, '25.12.2.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동일·유사과제의 절차 간소화, 동일·유사과제의 정의,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취소, 손해배상금의 수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종전의 분야별·사안별 전문위원회를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사안별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법 제10조의3제8항 및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의 제출서류 면제 방안을 규정함(안 제11조의3제1항 및 안 제11조의6제1항)

다. 법 제10조의3제8항 및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의3제8항 및 안 제11조의6제10항 신설)

라. 법 제10조의4제10항 및 법 제10조의6제1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그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취소를 신청하는 절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판단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의4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안 제11조의6 제16항 및 제17항 신설)

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한 경우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그 절차의 진행 중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을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과 당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 중 늦은 날로 함(안 제11조의5제11항)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유관 전문기관·단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8제1항)

사.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절차 및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3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산업규제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규제혁신과
- 전자우편 : jwjang2042@korea.kr
- 팩스 : 044-203-4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규제혁신과(전화 044-203-4546, 팩스 044-203-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